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332 호 2022. 2. 24.(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6호[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7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8호[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1호[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0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1호[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2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3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45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24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38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52호[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26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복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복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복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미디어정보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22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0조(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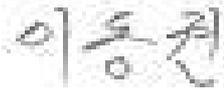
**1. 개정이유**

- 2022. 6. 1. 총선거 실시 예정임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회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에 관한 단서 신설(제4조제1항제1호)
- 나. 기타 조문 정비(제1조, 제4조제2항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2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관내 소재하는 변호사”를 “변호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입법·법률고문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 위촉 시 지역 제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22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2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을 “다  
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 거주 제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 선임 대상자격 중 지역 거주 제한 사항 삭제(제4조)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임채오



2022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31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에”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는”을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이유등을 구체화 하기”를 “이유 등을 구체화하기”로, “참고자료등”을 “참고자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청원자는”을 “청원인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2개이상 또는 2개기관이상”을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을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으로, “이의 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쇄·배부하고”를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로,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원자”를 “청원인”으로, “접수년월일”을 “접수 연월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20일이내”를 “20일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청원인등 진술)”을 “(청원인 등 진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심사”를 “심사·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를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로, “심사하게”를 “심사·의결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의원”을 “해당 의원”으로,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를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심사를”을

“심사·의결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을“(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아니하기로”를 “않기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어긋나는등”을 “어긋나는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휴회중”을 “휴회 중”으로,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3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채택 되었을”를 “채택되었을”로 하고, “즉시”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실”을 “경우 그 사실”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서명 날인한다”를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울산광

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구성·운영등”을 “구성·운영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소개의원의견”을 “소개의견”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명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청원인 성명란에 “(서명 또는 인)”을 신설하며, 소개의원란의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서식 좌측 하단의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회의장”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임위원회 관련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u>-----</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u>의회</u>에 청원하고자 하는 <u>자(이하 “청원자”라 한다)</u>는 <u>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 <u>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u>은 -----</p>
<p>②청원서에는 <u>청원자의</u>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u>서명·날인</u>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u>이유등을 구체화</u> 하기 위하여 필요한 <u>참고자료등</u>을 청원서에 첨부할 수 있다.</p>	<p>② ----- <u>청원인</u>----- ----- <u>서명 또는 날인</u>----- ----- <u>이유 등을 구체화하기</u> ----- <u>참고자료 등</u>-----</p>
<p>③<u>청원자</u>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u>의거</u> 작성하고, 청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u>청원인</u>은 ----- ----- <u>따라</u> -----</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u>의회의장</u>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p>	<p>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u>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u>-----</p>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된 것.
- 4. (생략)

제5조(이의 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

-----.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2. (현행과 같음)
- 3. -----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
- 4. (현행과 같음)

제5조(이의신청) ① -----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않은 -----  
----- 이의신청-----  
-----.

② --- 제1항에 따른 -----  
-----  
-----  
--- 제6조제3항에 따른 -----  
-----  
-.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  
----- 인쇄  
·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 반

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위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 (생략)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 ①·② (생략)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위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아 -----.

② ----- 청원인 -----  
-----  
접수 연월일-----.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폐회 중 -----  
----- 20일 이내 -----  
----- 기간 내 -----  
-----  
-----.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제척과 회피) ① -----  
-----  
-----  
----- 심사·의결 -----  
-----.

② -----  
-----  
-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 -----  
-----  
-- 심사·의결하게 -----.

③ ----- 해당 의원 -----  
----- 본회의의 의결 -----  
에 따른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 2. (생략)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④ -----  
-----  
- 심사·의결을 -----.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 ----- 각호의 어느 하나 -----  
----- 않기로 -----.

1. · 2. (현행과 같음)
- 3 .  
-----  
----- 어긋나는 등 -----  
-----

제11조(심사보고) ① -----  
-----  
-----  
-----  
-----  
----- 휴회 중 ----- 7일 이내 -----  
----- 3분의 1 -----  
-----.

② -----  
-----  
-----  
-----.

1.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생 략)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  
함이 타당하다고 채택 되었을 경  
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 5. (생 략)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  
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  
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  
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원인 또  
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  
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  
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

-----.

2.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  
----- 채택되었을 -----  
-----  
----- 지체 없이 -----.

② -----  
----- 지체 없이 -----  
-----.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  
----- 경우 그 사실-----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청원의 철회) -----  
-----  
-----  
서명 또는 날인-----  
-----  
-----  
-----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  
-----  
----- 해당 -----  
-----.

제16조(징계) -----

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  
치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  
 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광  
 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  
 용한다.

----- 제9조에 따른 -----  
 -----  
 ----- 때에는 「지방자치  
법」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  
 -----.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울산  
 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 신·구 별지 서식 대비표

현				개정안			
<b>【별지 제1호 서식】</b> 청원 소개의 견서				<b>【별지 제1호서식】</b> 청원 소개의 견서			
청원건명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소개년월일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소개의견			
<b>【별지 제2호 서식】</b> 청원 철회요구서				<b>【별지 제2호서식】</b> 청원 철회요구서			
청원건명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원	(서명 또는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변경된 근거조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청원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나. 청원서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추가(안 제6조제1항)
- 다. 기타 조문 정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0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가대동 908-5번지 외 5필지	하천의 명칭	○ 시례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상수도 배수관로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120㎡ ○ 계속: 23㎡
점용 기간	○ 일시: 2022. 3. 1. ~ 2022. 5. 31. ○ 계속: 2022. 6. 1. ~ 영구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1호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일원

### 3. 사업개요

(당초) 59,174m<sup>2</sup>

**(변경) 59,355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신명바다청소년야영장 대표이사 박만석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104-7번지

### 5. 사업기간 : 2014. 8. 28. ~ 2023. 12. 31.

###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위치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합 계				당초 : 59,174 변경 : 59,355	-	면적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 (편입면적 104-2번지 제외)
1	신명동 산30	임	당초 : 37,586 변경 : -	당초 : 11,595 변경 : -	이0현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중구 ***로 **, ***호(태화동)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104-10		당초 : - 변경 : 11,595	당초 : - 변경 : 11,595		
2	신명동 104-7	임	당초 : 35,511 변경 : 35,511	당초 : 35,511 변경 : 35,511	고0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3	신명동 104-4	임	당초 : 8,022 변경 : 8,022	당초 : 8,022 변경 : 8,022	고0구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울주군 **면 **로 ***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4	신명동 104-2	답	당초 : 260 변경 : 0	당초 : 260 변경 : 0	김0이	남구 **동 1***
5	신명동 104-6	임	당초 : 0 변경 : 1,740	당초 : 0 변경 : 399	주식회사 신명바다 청소년 야영장	울산시 북구 신명동 104-7
6	신명동 산1-3	임	당초 : 1,732 변경 : 1,732	당초 : 1,649 변경 : 1,732	고0숙	전라북도 **시 ***길 **,***동 ***호 (**동,*****)
7	신명동 산1-5	도	당초 : 1,843 변경 : 0	당초 : 1,360 변경 : 0	국토부	
	104-11	도	당초 : 0 변경 : 1,374	당초 : 0 변경 : 1,374		
8	신명동 산1-7	임	당초 : 590 변경 : 0	당초 : 553 변경 : 0	국토부	
	104-12	임	당초 : 0 변경 : 554	당초 : 0 변경 : 554		
9	신명동 산27-3	도	당초 : 160 변경 : 160	당초 : 156 변경 : 160	국토부	
10	신명동 산28-1	구	당초 : 4,106 변경 : 4,106	당초 : 68 변경 : 8	농림부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2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2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환경위생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송정동 1120-1번지, 호계동 943-8번지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의 신축(탐조대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180㎡ ○ 계속: 77㎡
점용 기간	○ 일시: 2022. 3. 1. ~ 2022. 6. 30. ○ 계속: 2022. 7. 1.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3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한국전력공사 동울산지사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3길 8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1215-3번지	하천의 명칭	○ 상안천
점용 내용	○ 콘크리트전주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18m <sup>2</sup> ○ 계속: 0.398m <sup>2</sup>
점용 기간	○ 일시: 2022. 2. 25. ~ 2022. 2. 25. ○ 계속: 2022. 2. 26. ~ 2026.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45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소재지 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정자8길 11	정자동 152-4	2022. 2. 24.	건축물 멸실
신답1길 7	상안동 358-46	2022. 2. 24.	건축물 멸실
신기3길 10	매곡동 419-4	2022. 2. 24.	건축물 멸실
신기3길 6	매곡동 612	2022. 2. 24.	건축물 멸실
매곡로 143	매곡동 615-1	2022. 2. 24.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3)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2.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238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A	신천6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476-4번지 일원	-	증) 24,026.9	24,026.9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 (052-241-8022)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건축주택과(052-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25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4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기간 : 2022. 2. 24.(목) ~ 3. 9.(수)
2. 모집대상 : 아래 선정자격에 적합한 사람
3. 모집방법 :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 게재
4. 모집인원 : ○○명
5.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가족정책과(여성정책담당)
  - 접수방법 : 방문(근무시간 09:00 ~ 18:00), 우편, 팩스(052-241-7659)
  - 신청서 : [붙임1] (다운로드 작성 제출)
  - ※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가족정책과
6. 기 능 :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
  -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7. 선정기준
  -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제외대상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위원 선정일 기준)
  - 금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된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않거나 공익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선정결과 : 2022. 3. 24.(목)한 개별통지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가족정책과(여성정책주무관 ☎  
(052)241-7671~3)로 문의하여 주십시오.